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명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근로자대표 제동국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제1조(보상휴가의 부여) 보상휴가는 사용자의 지시와 이에 대한 직원의 사전 동의에
따라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분 및 가산수당에 대해 부여한다.

제2조(기준일) ①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 직원의 경우, 보상휴가의 기준일은 선
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2주)으로 하고, 정산기간 종료일을 보상휴가 발생일로 보며,
보상휴가는 다음 정산기간부터 익년도 말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산기
간(2주)이 익년도로 이어지는 경우에 발생한 보상휴가는 발생연도 말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대상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휴가 기준일은 1주로
하고, 보상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주의 다음 주부터 익년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
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전에 발생한 연장·야간
·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 기준일은 1주로 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부터 일괄 부여하며, 보상휴가 부여 시점부터 익년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보상휴가 시간의 계산) 보상휴가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단,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을 보상휴가로 부여한다.

제4조(사용원칙)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직원은 연차휴가 사용전에 보상휴가를 우선 사용
한다.

제5조(사용단위) 보상휴기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한다.

제6조(퇴사자에 대한 사용기준)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 잔여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유효기간) ①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변경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양 당사자 중 일방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합의서가 확정될 때 까지 동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한다.

2019. 7.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근로자대표 제동국 (인)